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651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0. 21.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8. 선고 2019가단2082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답 1,8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8. 6. 30. 접수 제223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8, 9행의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5쪽 제2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가 비슷한 시기에 H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제시 I건물 J호에 관하여는 1999. 5. 13. 원고의 남편인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특히 2001년 무렵에는 원고의 동생인 L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9가단7465, 창원지방법원 2000나6012)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률상 원인이 대물변제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졌음에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8. 6. 30.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약 22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득관, 판사 서민아, 판사 석동우